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입주 학생 선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의 2018년도 입주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2. 선발인원: 268명 (남학생 92명, 여학생 176명)

3. 입주자격

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 기준지 또는 원적이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원격대학, 대학원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지원대학 합격결과 미발표 시 대학지원수험표로 지원가능

※ 대학원생 제외

4. 선발기준

- 학업성적 (30퍼센트) + 생활정도 (70퍼센트) + 가점(5,3점) - 감점 (5점)

가. 학업성적 (30퍼센트)

- ①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 ② 재학생은 당해학년 2학기 성적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
- ③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졸업 해당 학년 성적 제출

나. 생활정도 (70퍼센트)

- ① 부·모·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2017년도) 재산세 (35퍼센트)
- ②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 (35퍼센트)

※ 부·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시 높은 금액으로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인 경우 생활정도 확인서류는 미제출

다. 가점(5점, 3점)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점수 적용

- 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5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점)
- ③ 입주학생 중 학생 자유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입주 신청 시 7퍼센트 범위(남학생 6명, 여학생 12명 이내)에서 관장이 추천한 자(5점)
- ④ 다자녀 가구(입주신청일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3점)
- ⑤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3점))
- 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입주생 선발연도 직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3점)

라. 감점(5점)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 중 기숙사 관생수칙에 의한 연간 70점 이상 벌점이 누적된 자

마. 기타사항

- ① 입주학생 선발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함
- 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생활정도,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이하 “수급자 등” 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외에 주소를 둔 재외도민(이하 “국외재외도민” 이라 한다)과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 전형자(이하 “특별전형자” 라 한다)는 정원의 10%이내(26명)로 별도 선발하며, 정원 초과 시 추천에 의함. 다만, 국외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
- ④ 입주학생은 1가구당 1명 입주를 원칙으로 함. 다만, 소년·소녀 가장인 가구와 신청자가 정시모집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외

5. 입주학생 자격제한

- ① 퇴학,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만, 휴학자 중 2018학년도 1학기 등록할 자는 제외
- ②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의하여 퇴실한 자
- ③ 휴학 등 특별한 사유없이 매학기 말 2월 이내에 퇴거했던 자
- ④ 『고등교육법』 제20조 제②항에 다른 각급 대학의 수업연한의 최종학기를 이수한 자

6.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사 신청이 불가함

가. 구비서류

① 공통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
- 부·모,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일 주소지인 경우 1통)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일 내용인 경우 1통)
- 부·모·본인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각 1부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제출
-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7.01.01~17.12.31. 납부내역 명시)

가입구분	준비서류
부·모 모두 가입 (맞벌이 부부 등)	◦ 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부·모 한분 가입	◦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미가입자: <u>자격득실확인서</u> 또는 <u>건강보험증 사본</u>
부·모 모두 미가입	◦ 부·모 각각 <u>자격득실확인서</u> 또는 <u>건강보험증 사본</u>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외재외도민인 경우 거주지역 도민회장 추천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학업성적 증빙서류

- 신입생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
 -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을 시 졸업해당 학년 성적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대학합격통지서 1부 (미발표 시 대학지원수험표 제출)

- 재학생: 성적증명서 1부 (전체 학기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
- 휴학생: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나. 기타사항

- ① 가점 특례 대상자인 경우 가점 증명서류 첨부
- ② 반드시 각각의 서류는 '원본' 및 '원본대조필' 확인 된 서류 제출
- ③ 신입생이 대학지원수험료를 제출한 경우 입사 등록 시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제출
- ④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입주학생 모집·선발예정 일정

가. 접수기간: `18. 01. 05. ~ 01. 31.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genius.jpdc.co.kr>)

※ 방문·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이미지(JPG,PNG,GIF) 파일로 변환(스캔)후 첨부

입주학생 결과발표		입주설명회 /호실추첨	등록 (기숙사비 납부기간)	입주
◦ 기초생활수급자 /국외재외도민	`18.02.06. (예정)	`18.02.14. (예정)	`18.02.20. ~02.24. (예정)	`18.02.25. ~ (예정)
◦ 재학생/신입생	`18.02.09. (예정)			

* 입주설명회/호실추첨 장소 추후 공지

8. 기숙사비 및 입주기간

가. 기숙사비

기숙사비	납부기간
① 입사비: 50,000원 (퇴사 시 미반환)	◦ 1학기분: `18. 02. 24 ◦ 2학기분: `18. 08. 24
② 2 인실: 150,000원/월/인	
③ 3 인실: 120,000원/월/인	

나. 입주기간

- ① 1학기: `18. 02. 25.~`18. 08. 24.
- ② 2학기: `18. 08. 25.~`19. 02. 21

9. 주의사항

- ① 영재관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6.기술대학 7.각종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입사신청 불가
- ②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
- ③ 재산세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필히 제출

10. 문의처

-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064) 780-3514)
- 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운영사무실 (☎(02) 2659-0616)